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45호 2014. 10. 29.(수)

【조 례】

제948호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949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950호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951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952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폐지조례 21

【규 칙】

제475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22

【훈 령】

제245호 공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규정 폐지규정 24

【예 규】

【고 시】

【공 고】

제2014-1291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5
 제2014-1303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문 47
 제2014-1304호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50
 제2014-1321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7
 제2014-1322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2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10. 14)
에서 의결된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29일

공주시 조례 제948호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을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서 공주시청” 으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 이라 한다)” 을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민원과에 약간의 공주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법률, 세무, 행정, 노무, 건축분야 등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2조제2항 중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기타”를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그 밖의”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조

제5조제3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근무시간)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u>민원상담위원</u> (이하 “<u>상담위원</u>”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서 <u>공주시청</u>----- -----<u>공주시 민원상담위원</u>----- ----- -----.</p>
<p>제2조(위촉) ① <u>민원과에 약간의 상담위원을 두되,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제2조(위촉) ① <u>민원과에 약간의 공주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법률, 세무, 행정, 노무, 건축분야 등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u></p>
<p>② <u>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안내 및 <u>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기타</u> 생활민원의 무료상담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u></p>	<p>② ----- ----- --<u>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그 밖의</u> ----- ----- -----.</p>

제3조(자격)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상담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률분야 : 공주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
2. 세무분야 : 세무사, 회계사 또는 지방세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전직 6급이상 공무원으로 세무행정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
3. 행정분야 : 전직 6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행정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주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4. 노무분야 : 공인 노무사
5. 건축분야 : 건축사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삭 제>

<삭 제>

3. 공무원

제5조(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생략)
- 2. 노약자, 부녀자 등을 위한 민원무료대서
- 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건의
- 4. 5. (생략)

제7조(근무시간) 행정분야 상담위원은 공주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하여 상근하게 하고, 법률·세무·노무 및 건축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 3. 4. (생략)

제5조(업무) -----
-----.

- 1. (현행과 같음)
- 2.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조
- 3. -----

----- 경우에는 -----
-
- 4. 5. (현행과 같음)

제7조(근무시간)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해촉) -----

-----.

- 1. (현행과 같음)
- <삭제>
- 3. 4. (현행과 같음)

<p>제10조(실비보상) 상근 상담위원 에게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p>	<p>제10조(실비보상) ----- -----<u>범위</u>----- ----- -----.</p>
<p>제11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 지 서식에 <u>의해</u> 민원상담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한다.</p>	<p>제11조(기록유지) ----- ----- <u>따라</u> ----- -----.</p>

공주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10. 14)에서 의결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29일

공주시 조례 제949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주소”를 “등록기준지·주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전에 제증명 등의 발

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4. 10. 29>

제 증 명 등 수 수 료 요 율 표(제5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삭제)			
(1) (삭제)			
(2) (삭제)			
2.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500	
3.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재직(경력, 퇴직)증명	1통	무료	
4. 사실 및 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2) 부재자사실확인	1통	900	
(3) 소유사실확인	1통	800	
(4) 실수요자사실확인	1통	700	
(5) 가족자가사육사실확인	1통	700	
(6) 관상수목자가사실확인	1통	3,000	
(7) 풍수해등으로인한 피해사실확인	1통	3,000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1필지 건축선측량	1필지	5,000	
(2) 도로구축의경계선, 계획선또는 건축선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3,000	
(3) 표준주택설계도면	1필지	1,5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 제> 2010. 01. 04.			
(2) 미과세증명	1통	800	
(3) 세목별과세증명	1통	800	
(4) 징수유예증명	1통	800	
7. 회계에 관한 증명			
(1) (삭 제)			
(2) (삭 제)			
8.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공부등에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	

[별표2] <개정, 2014. 10. 29>

정보공개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편의 화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1편이 1켄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켄(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켄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 복제 -1건(1MB기준)1회: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공주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10. 14)
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29일

공주시 조례 제950호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를 “제52조” 로 한다.

제3조 중 “제13조, 제14조” 를 “제16조, 제17조” 로 한다.

제4조 중 “제64조” 를 “제52조” 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개정, 2014.10.29.>

변속차로 최소길이(제7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4. 사도	-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5. 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최소3m)	
6. 판매시설, 일반음식점, 숙박 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 시설등	10대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최소3m)	
	11~30대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31대 이상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7. 주차장·운수시설·의료 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등	30대 이하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3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8. 공장	20대 이하	20(15) [10]	40(30) [15]	10(10) [10]	20(20) [20]
	21~50대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51대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9. 주택진입로 등	(10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최소3m)	
	(11~100가구 이하)	30(20) [15]	60(40) [25]	10(10) [10]	20(20) [20]
	(101가구 이상)	45(30) [20]	90(65) [40]	15(10) [10]	30(20) [20]

주 : 1) 설계속도 80km/h,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는 60km/h, []는 50km/h 기준임.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값을 기준으로 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청서 작성</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제출 교부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접 수</div> →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현지조사</div> ↓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검 토</div> ↓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결 재</div> ↓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허 가 서</div> </div> </div>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52조----- ----- ----- ----- -----.</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시·군도 중 2차로 이상의 도로와 법 제20조에 따른 공주시 관할 국도, 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p>	<p>제3조(적용범위) ----- ----- 제16조, 제17조----- ----- ----- ----- ----- ----- -----.</p>
<p>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p>	<p>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 제52조----- ----- ----- ----- -----.</p>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10. 14)에서 의결된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29일

공주시조례 제951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재 후 10년 이상 된 가로수 및 흉고직경 10cm이상의 가로수 제거 시 다만, 진,출입로를 활용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가로수관리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는 가로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② ~ ⑨ (생략)</p>	<p>제4조(가로수관리위원회)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식재 후 10년 이상 된 가로수 및 흉고직경 10cm이상의 가로수 제거 시 다만, <u>진,출입로를 활용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공주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10. 14)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29일

공주시조례 제952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폐지조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10. 14)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의회의장 이 해 선 인

2014년 10월 29일

공주시의회 규칙 제475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중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다만, 질의·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은 20분, 다른 의원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제74조 제2항 “10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p> <p>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생략)</p> <p>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p> <p>① ----- ----. 다만, 질의·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은 20분, 다른 의원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7일 ----- ----. ----- ----- ----- -----.</p>

공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10월 29일

공주시 훈령 제245호

공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규정 폐지규정

공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3년 및 2014년도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현행규정 내용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등 할 수 있는 경우(안 제20조의2)

-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신설)
- 재래시장의 장육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내 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신설)

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안 제22조의2)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때 관리능력 평가 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대부료의 요율 변경(안 제28조제5항)

-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변경

라.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율을 정함 (안 제32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

마. 대부료 등의 조정 (안 제34조)

- 전년도보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감액을 적용

바. 대부료 등의 이자율을 정함 (안 제35조, 제 3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의 2)

-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율을 정함

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 수의매각할 수 있는 동지역 면적 확대 1,5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로, 건물 점유·소유 적용기간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
-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신설)
-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면·동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내에서 매각(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회계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14 - 702

- 전 화 : 041) 840-8268, FAX : 041) 840 - 231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항” 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등 할 수 있는 경우) ①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9호 및 제29조제
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

1.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시장 사용료가 정해진 재래
시장의 장육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내
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등 이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적법하게
전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나. 기 사용 · 수익하고 있는 자가 없거나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 수익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 · 수익허가 하는 경우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추천한다. 다만, 장육이 소재한 지역주민을 우선하고, 장육 소재 지역외의 자가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 결산, 사업실적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 · 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 · 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27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으로” 를 “지식산업센터로” 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제3호 중 “설치자가” 를 “설치자에게” 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100분의 25

④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경 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를 “기간으로”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를 “기간으로” 로, “다음 각 호와”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 은 “교환차금” 으로, “매각” 은 “교환” 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1월24일” 을,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써 2003년12월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로, “토지로서” 를 “토지로서” 로, “1,500제곱미터 또는 3천제곱미터” 를 “2,0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 로,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 를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로,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를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로,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을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으며,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로,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 을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 으로, “한정” 을 “한정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면·동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남은 금액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삭제)</u></p> <p>3. ~ 5.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 4. (생략)</p> <p><u><신 설></u></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p> <p>-----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 에 관한 사항</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u>7조제3항</u>-----</p> <p>2. ~ 4. (현행과 같음)</p> <p><u>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허가 등 할 수 있는 경우)</u></p> <p><u>①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9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u></p>

1.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에 따라서 시장 사용료가 정해진
재래시장의 장옥을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내 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등 이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적법하게 전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

나. 기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없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추천
한다. 다만, 장옥이 소재한
지역주민을 우선하고, 장옥

<신 설>

소재 지역외의 자가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 결산, 사업실적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
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 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 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 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매 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 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 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 다.

1. 2. (생 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 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

여부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

-----.

1. 2. (현행과 같음)
3. -----

-----지식산업센터로-----

4.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 7. (생략)

<신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④ -----

-.

1.·2. (현행과 같음)

3. -----

-- 설치자에게 -----

4. ~ 7. (현행과 같음)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
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
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100분의 25

④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경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
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

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③ (생략)

<신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기간으로 -----

-----.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삭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프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생략)

③ -----

기간으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용지, -----

5.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삭 제>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

제39조(조성원가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생략)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4.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

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

-----.

1. (현행과 같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동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써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5. (생략)

<신설>

<신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② (생략)

<신설>

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 ----

---- 한정한다)

5. (현행과 같음)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
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면·동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이 경우에 남은
금액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

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3퍼
센트로 한다.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적 (㎡)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정연월일	주소	소유자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구분			
공주	계룡	하대	산37-16	5,846.89	5,846.89	5,846.89	제1종 수원함양	2008.12.26 (착오지정)	공주시 반포면 창벽로 714-4	이은정

※ 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FLIS) 구적에 의함

2. 해제 연월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해제 고시

3. 해제 사유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착오지정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위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불임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주시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41-840-8416)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2014. 10. 29.

공 주 시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m ²		
[]지정 []해제 예정고시일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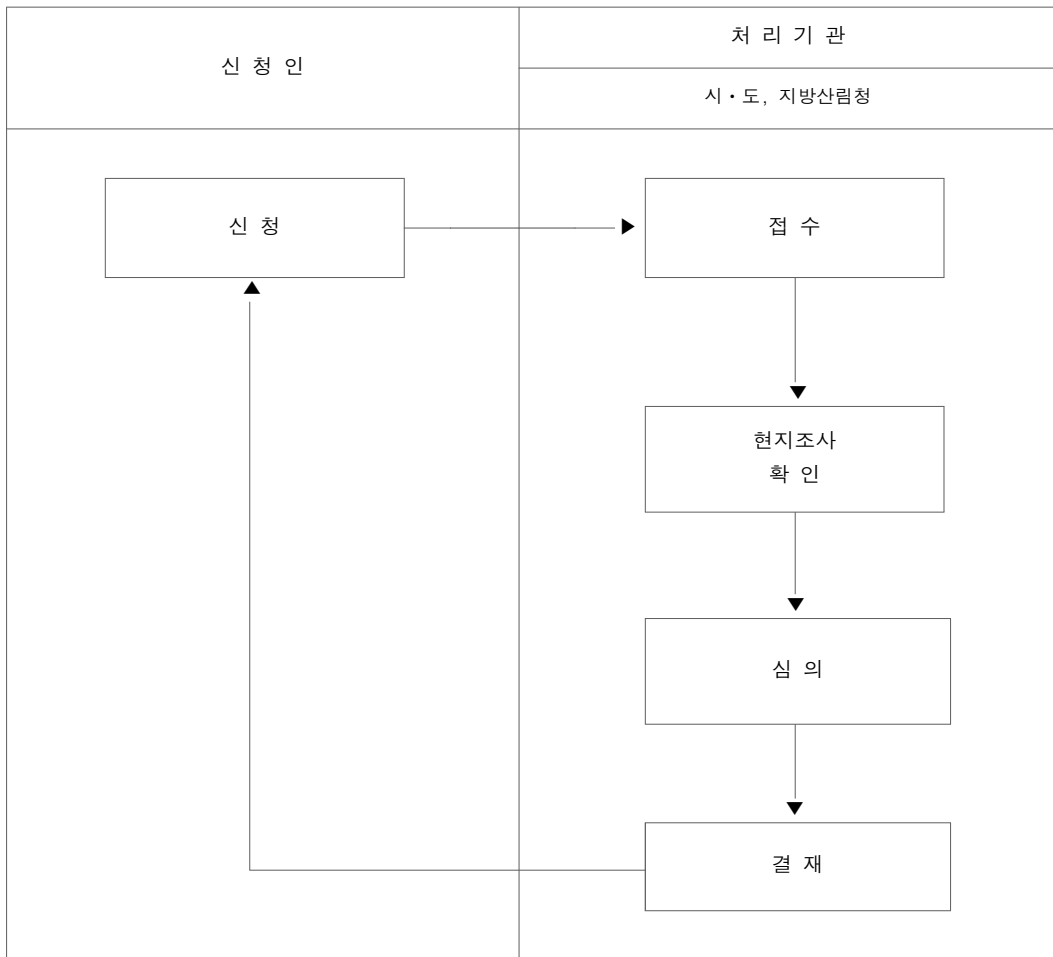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공주시 공고 제2014 -1304호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등), 행정, 가사(혼인, 가족 관계, 상속 등) 형사 등 시민의 일상생활속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전문가(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상담실 명칭, 상담 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법률상담의 범위에 및 상담 대상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상담관의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제7조)
- 상담방법, 처리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제10조)
-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 4)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 전화: 041)840-2032, FAX: 041)840-2306

-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담당자 윤정문(041-840-20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공주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그 밖에 다양한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6조(상담관의 위촉)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가 잦은 경우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상담방법) ① 상담자는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전화·출장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출장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접수번호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접수일	
No.						. . .	
사건구분 (□ 표시)	□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가족관계,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상 담 자	성명				성별	남 여	
	주소				연락처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							
<input type="checkbox"/> 상담으로 종결 () <input type="checkbox"/> 법률구조 필요 () <input type="checkbox"/> 추가회시 필요 ()		무료법률상담관 변호사				(인)	

상담할 내용

공주시 공고 제 2014-1321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선6기 시정목표인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실현
- 주요 공약 및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의 재배치 및 조직 정비

2. 주요내용

《주요 개편 내용》

1. **【함께하는 참여시정】** 시민과의 소통 및 협치행정 강화를 위한 팀 신설
[신설] 시민소통(시정담당관실), 컨택센터(시민봉사과), 시민교육(교육체육과), 생활민원(건설과)
2. **【도약하는 지역경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담조직 집중 보강
[신설] 미디어담당관실, 전통시장(기업경제과), 귀농귀촌(농촌진흥과), 밤 연구(시정발전연구과)

3. **【희망담은 역사관광】**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기구 신설
 [재편] 전략사업과 : 도시재생, 고도육성, 도지문화시설팀 신설 재편
 문화관광과 : 문화체육과+관광과(업무통합 및 테마관광팀 신설)
 문화재과 : 관광경영사업소 소속 사적운영담당과 석장리박물관 흡수 재편하여 업무 효율화 및 실행력 확보
4. **【품격높은 교육문화】** 교육도시 명성과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 신설
 [신설] 교육체육과(교육정책, 시민교육, 체육진흥, 체육시설)
 [재편] 5도2촌과→시정발전연구과
5. **【행복실현 맞춤형복지】** 개별 복지시설의 관리집중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재편] 복지시설사업소(종합사회복지관, 한옥마을, 나래원),
 여성보육+다문화가정→여성다문화+보육
6. **【지역안정 등】** CCTV 통합관리, 경찰·소방 연계 재난 총괄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력 강화로 시민안전 확보
 [신설] 통합관제(안전관리과)

가. 행정기구 조정

기 관 별		현행	개편	증감	비 고
총 계		○ 5급 정원(52명) : 변동없음			
본 청	국·단	3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미디어담당관, 교육체육과 ● 신설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도2촌과 → 시정발전연구과 - 공공개발사업과→전략사업과 ●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자원과(환경과+청소과) - 문화관광과(문화체육과+관광과)
	담당관·과	25	25	-	

직속기관	기 관	2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관 : 종합사회복지관(6급) 복지시설사업소로 이관
	과	6	6	-	
사 업 소	소 계	14	13	△1	
	소장	5급	3	3	
6급		1	-	△1	
읍·면·동	기 관	16	16	-	
의회사무국	기 관	1	1	-	

나. 정원조정

□ 공무원 종류별 정원 조정

구 분	계	일반직 (99% 이상)							별정직정무직 (1% 이내)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정무직	
			소계	일반직 ^①	관리 ^② 운영					전담 ^③ 직위
현 행	998	995	960	910	47	3	5	30	2	1
개 정	998	995	960	912	45	3	5	30	2	1
증 감	-	-	-	2	△2	-	-	-	-	-

□ 일반직* 총 정원 조정(①+②+③)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960	6	52	250	279	225	148
조 정	960	6	52	249	279	226	148
증 감	-	-	-	△1	-	1	-

※ 보건진료직렬 6급 15명중 10명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따라 별도 관리

① 일반직 정원 조정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계	910	6	52	246	268	215	123
	일반직	841	6	52	243	259	199	82
	전 환 일반직	69	-	-	3	9	16	41
조 정	계	912	6	52	245	269	216	124
	일반직	843	6	52	242	260	200	83
	전 환 일반직	69	-	-	3	9	16	41
증 감		2	-	-	△1	1	1	1

- 일 반 직 : 2013.12.12.이전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및 최초 임용시부터 일반직 공무원
- 전환일반직 : 2013. 12. 12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하여 시험없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② 관리운영직 정원 조정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47	-	-	3	9	10	25
개 정	45	-	-	3	8	10	24
증 감	△2	-	-	-	△1	-	△1

③ 전담직위 정원 조정 : 현행과 같음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3	-	-	1	2	-	-

④ 연구직 및 지도직 정원 조정 : 현행과 같음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지도관	지도사
현 행	5	-	5	30	3	27

⑤ 별정직 정원 책정 : 현행과 같음

구 분	소계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행	2	1	1	-	-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구 분	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현 행	998	534	17	157	62	228
개 정	998	548	17	157	51	225
증 감	-	14	-	-	△11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담당)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880 / 전화: 041-840-2070 / FAX: 041-840-240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0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공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소속 행정기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둔다

제3조(국장·단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단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4조(부시장)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5조(국·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6조(국·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국, 안전산업국 및 한시기구인 성장전략사업단을 둔다.

제7조(시민국에 두는 과) ① 시민국에 사회과, 복지지원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문화재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시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기획, 복지연계, 행복키움지원,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 장애인, 여성·다문화,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보육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민원, 가족관계등록·여권, 차량등록, 컨택센터에 관한 사항
5. 경리, 계약, 재산, 청서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과표 결정, 세외수입, 세입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정책, 문화예술, 관광개발, 관광축제, 테마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문화재, 전통사찰,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재정책 및 보존관리, 사적, 석장리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책, 시민교육, 체육진흥,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12. 문화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업무 전반 및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산업국에 두는 과) ① 안전산업국에 안전관리과, 기업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정책과, 허가과, 교통과, 환경자원과, 수도과, 토지과를 둔다.

② 안전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정책, 재난관리, 재해대책, 통합방위, 향토예비군 육성, 민방위, 하천관리,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기업지원, 산업유통,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관리, 실업대책 및 노사협력, 전통시장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과 농촌개발, 도로계획, 도로시설, 지역개발,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5. 산림육성, 산림보호, 임산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 도시계획, 도시개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 인·허가·신고, 주택행정, 건축과 관련된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등
8. 교통행정, 교통안전, 차량관리, 가로조명에 관한 사항
9. 환경정책, 환경 보전관리 및 지도, 수질관리, 청소행정, 자원순환, 폐기물,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10. 수도행정, 상·하수도, 지하수 및 상수도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1. 토지행정, 지적관리, 공간정보, 지리정보, 새주소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성장전략사업단에 두는 과) ① 성장전략사업단에 시정발전연구과와 전략사업과를 둔다

② 성장전략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단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3.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협력사업 및 지역공동화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에 관한 사항
5. 농촌혁신에 관한 사항

6. 밤 연구에 관한 사항
7. 사곡면 계실리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0. 도자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등) ① 보건소에는 보건과와 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 사업, 농·축·수산업 정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에 둔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등) 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정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소장은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축·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2. 농촌 지도사업의 종합 기획 수립·조정
3.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4. 농업인 교육 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5. 농축산물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및 정부양곡에 관한 사항
6. 축산행정 및 내수면 개발·보호에 관한 사항
7. 농업경영 개선,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9. 토양, 비료, 병·해충 예찰 및 농업 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10.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지도 및 기술개발
11.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존 등 「농지법」에 관한 사항 총괄
12.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소장 및 관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 및 관장을 두며, 소장 및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및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사업소

- 가.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문예회관, 곰나루 야외공연장, 수영장, 국공장, 곰나루국민관광지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공집회에 대한 업무
- 다. 곰나루 야외무대 광장의 관리 및 운영
- 라.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운영
- 마.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 유치
- 바. 기타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복지시설사업소

- 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 관리 및 운영
- 나. 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
- 다. 나래원의 관리 및 운영
- 라. 공예공방촌 및 공예품전시판매관, 연지·야생화단지 등 소관 시설 관리 운영
- 마. 기타 복지시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시립도서관

- 가. 「도서관법」에 관한 사항 총괄
- 나. 시립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 다.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도서관 포함)의 육성
성과 서비스 활성화

제5장 읍·면·동

제19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본청과 원활하게 업무를 협의 추진해 나간다.

제21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부읍·면장의 직위 및 직급) ① 법 제120조(하부행정기구)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9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98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제24조(정원채정 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

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③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 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공공시설관리소, 관광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을 “ 문화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②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③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행정담당”을 “시정팀장”으로 하고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④ 공주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5항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

⑤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회과장, 복지과장”을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 중 “사회과장·복지과장·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을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으로 한다.

⑧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중 “민원과”를 “시민봉사과”로 한다.

별지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⑫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⑬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⑮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⑯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⑰ 공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⑱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중 “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①9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담당”을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②0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과장”을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토지과장”으로 한다.
- ②1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을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 ②2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기업유치담당”을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 ②3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과장, 허가과장”을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 ②4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 ②5 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지관리담당”을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
- ②6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관련 업무 담당”을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 ②7 공주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허가팀장”으로 한다.
- ②8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통안전업무담당”을 “교통안전업무팀장”으로 한다.

㉔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환경과장”을 “안전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담당관,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㉕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환경정책팀장”으로 한다.

㉖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을 “기획담당관, 도시정책과장,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별지제4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㉗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㉘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㉙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농업과장, 축산과장”을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㉚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농업과장, 복지과장”을 “농정과장,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담당”을 “여성농업인 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

③⑥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⑦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중 “공공시설관리소장”을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③⑧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중 “공공시설관리소장”을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③⑨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본 조직개편관련 인사 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의당로 23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40	유 구 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39	이 인 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공주시 탄천면 통산3길 4-11	탄 천 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10	계 룡 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공주시 반포면 수실1길 8-8	반 포 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종합사회복지관내)	의 당 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공주시 정안면 광정장터길 16	정 안 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공주시 우성면 동대3길 11	우 성 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공주시 사곡면 호계장터2길 9-1	사 곡 면
공주시 신평보건지소	공주시 신평면 신평길 81-11	신 풍 면
구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	구계리, 연종리, 세동리, 동해리
추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883	추계1·2리, 덕곡리, 문금리, 탑곡리
신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247-2	신흥1·2리, 오룡리, 초봉리, 주봉1·2리, 만수리, 운암리
대학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16	대 학1·2리, 운곡리, 견동리, 국동리, 유하리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덕지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하효동길 64-6	안영리, 덕지리, 화정리, 남산리
화현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104	화현리, 경천리, 금대리, 상성리, 월곡리, 죽곡리, 향지리
왕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약로 395	구왕리, 내흥리
양화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410	양화1·2리
마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마암길 29	마암리
상신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6	상신리, 하신리, 온천1·2리
석장리 보건진료소	공주시 석장리길 88-35	석장리동, 무릉동
문천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622	문천리, 내문리, 산성리, 월산리
장원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구억말길 15-2	장원1·2리, 운궁리, 고성리, 쌍달리
모란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달성길 75	상용리, 화봉1·2리, 전평리, 북계1·2리, 평정1·2리, 의당면 오인리
용봉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신영골길 1-6	용봉리, 죽당리, 안양리, 오동리, 봉현리, 보흥리, 어천리, 방흥리
운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사곡면 정안마곡사로 1762	운암리, 회학리, 가교리, 월가리, 유용리, 부곡리
대룡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새우재길 51	대룡리, 입동리, 용수리, 청흥리, 봉갑리, 조평리, 쌍대리
평소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평화길 152	평소리, 영정리, 선학리, 화흥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6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 치
문화시설사업소	공주시 고마나루길 1(웅진동)
복지시설사업소	공주시 고마나루길 30(웅진동)
시립도서관	공주시 고마나루길 17(웅진동)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8% 이내	32% 이내	24% 이내	8% 이상	0%

다만, 보건진료직렬 6급 17명 중 16명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0%	30% 이내	70% 이내	0% 이내	0%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5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사 무 회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98	-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960	-				
4 급	6	4	1	1		
5 급	52	26	2	5	3	16
6 급 이 하	902	-				
별 정 직 계	2					
6급상당 이하	2					
연 구 직 계	5	-				
연 구 관	-					
연 구 사	5	-				
지 도 직 계	30	-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7	-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제25조제2항 관련)

관 리 기 관 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종	직급			
본청	성장전략사업단	일반 직	4급	1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장
	기 획 담 당 관	일반 직	6급	1	2015년 6월 30일까지	규제 개혁

공주시 공고 제 2014-1322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민선6기 시정목표인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이는 행복공주』 실현
- 주요 공약 및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의 재배치 및 조직구조의 재설계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안 제49조 제1항) : 총 정원 변동없음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관리운영·전담직위포함)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4급	5급	6급이하	계	6급상당	7급상당	소계	연구사	연구관	소계	지도사	지도관
현행	998	1	960	6	52	902	2	1	1	5	5	0	30	27	3
개정	998	1	960	6	52	902	2	1	1	5	5	0	30	27	3
증감	-	-	-	-	-	-	-	-	-	-	-	-	-	-	-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구 분	일반직(관리운영·전담직위포함)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960	6	52	250	279	225	148
개 정	960	6	52	249	279	226	148
증 감	-	-	-	-1	-	1	-

나. 사무조정 내역 : 붙임 개정안과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담당)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880 / 전화: 041-840-2070 / FAX: 041-840-240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5조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본청, 시의회사무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①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조정) ① 2이상의 국·단 또는 담당관·과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 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비중과 업무의 양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

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목적을 최우선하여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업무 담당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국·단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의 사무는 국·단장이, 직속기관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의 사무는 직속기관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사무의 분장) ①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과장 및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소관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 잡히게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분장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시 본청

제5조(기획담당관) ① 기획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담당관의 설치목적은 시 미래비전 설정과 시정 종합 기획,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 등에 있고,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미래비전 설정 및 시책 개발
2. 시정 종합 기획 수립 및 각종 현안 조정 관리
3. 시장 공약사항 추진 관리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5.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6.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
8. 재정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9. 예산편성·배정 및 집행사항 지도·감독

10. 국·도비 보조금 관리
11. 의회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12.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 법제에 관한 사항
13. 법질서 확립 총괄
14.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15. 시정의 심사분석·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6. 국·도·시정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7. 각종 통계 및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9.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기획조정, 예산, 의회, 법무, 규제개혁, 서울사무소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정담당관) ① 시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정담당관의 설치 목적은 시 행정의 종합 조정,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의 종합 조정
2. 국·도·시정의 주요시책 추진
3.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인감관계 업무 및 국외이민 출국자 관리
5. 직원 모임 운영 및 각종 회의 통제
6. 사업소, 읍·면·동 행정 육성지도 및 종합평가
7.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산하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구 등의 조직 관리
9. 직장 자체방호 계획 수립 시행
10. 응진문화상 시상 및 민간인 포상
11.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2. 공무 국외연수(여행)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관리
14. 세계역사도시연맹에 관한 사항
15. 시 견학자에 대한 안내 홍보
16.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 총괄
17. 여론대화 행정 및 지방행정의 여론 수렴
18. 직소민원(방문민원,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 사항 처리
19. 민생현안에 관한 사항 조정관리
20. 기록사진 촬영·기록보존 및 시정 홍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1. 시보, 시정지, 인터넷신문 발간
22.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매체에 보도된 시정기록 수집 관리
23.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및 해명 등에 관한 사항 총괄
2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25. 각종 위원회 및 사회단체 운영 총괄 관리
26. 새마을 운동 업무 추진
27.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8.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9. 충효예교실 운영, 충남정신운동 등에 관한 사항
30. 적십자 회비 관련 업무 및 반상회 운영
31. 행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32. 각종 대·내외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33.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34. 그 밖에 시정, 시민소통, 홍보, 새마을, 의전과 관련된 사항
35. 그 밖에 타 담당관·국·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무

제7조(인사담당관) ① 인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담당관의 설치목적은 시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무원
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며, 후생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행정능률
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인사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생산·유통·보존·보안·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 총괄
6. 복무 지도·감독 및 일·숙직 관리
7.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 관리
8.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9. 시장 및 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0.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에 관한 사항
11.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임면·징계·표창 및 보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 책정, 채용, 인사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의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총괄
16.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산업재해, 직무·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총괄
17.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후생복지,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
19.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연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총괄
20.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에 관한 사항
21.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공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포함) 등 노동관계법에 관한 사항 총괄

23. 그 밖에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 복무, 후생복지 등 총괄

제8조(미디어담당관) ① 미디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미디어담당관의 설치 목적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지역 정보화 지원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서장을 보좌한다.

1. 시 홍보매체의 통합 관리 운영
2. 시정홍보의 종합 기획·조정
3. 시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
4. 시정지, 인터넷 신문 발간 지원
5. 지역마케팅 총괄
6.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농촌체험 및 3농혁신 사업 개발 및 추진
7. 온라인(고맏나루)장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온라인(고맏나루)장터 입점자 및 제품관리, 유통관리,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9. 온라인 공주 시민관리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공주 시민제도 확충, 가맹업소관리, 여행코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및 전산운영 계획 수립
12.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13. 전산화 대상 업무 연구 개발
14. 전산실 운영 및 우수 프로그램 보급
15.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급 및 각종 서버 구축·관리
16.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
17. 전자결재시스템 관리·운영
18. PC 및 주변기기 보급·관리

19. 지역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20. 통신정책 기획 및 추진
21. 통신 보안 정책 수립 및 운영
22. 본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전화, 팩시밀리, 방송시스템 관리·운영
23. 정보통신망 구축·관리
24.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운영
25.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
26. 그 밖에 미디어 홍보정책, 지역마케팅, 정보화, 통신에 관한 사항

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의 설치 목적은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립하며, 지속적인 특별사법경찰활동으로 민생안정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서장을 보좌한다.

1. 감사행정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2. 시 자체 감사,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비위조사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4. 자체감사 및 징계, 소청 건 처리
5.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사무 인수인계 확인 등
6.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7. 기동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
8. 특명사항·지시사항 등 조사 처리
9. 공직자 등의 청렴에 관한 사항
10. 일상감사 운영 및 감사사항 기록 관리
11.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2.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

13. 진정민원 처리 및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총괄
15.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 사항 처리
16. 고정사항 등 탄원민원 조정
17. 다수·집단민원 및 특수민원 조정
18.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집단민원 해소대책 총괄 추진
19.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20. 농·축·수·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21. 그 밖에 감사, 조사, 기술감사,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시민국) 시민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시민봉사과장·회계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문화재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사회과장) 사회과의 설치목적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보훈단체 운영 지원
3.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사업
4. 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 연계 관리
5. 주민서비스 민·관 협의체 운영
6. 자원봉사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7. 민간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도·운영
8. 어려운 이웃돕기 및 자원봉사 활성화

9. 자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10. 보건복지부 소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각종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12. 부랑인 및 노숙인, 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13. 위기 가정 등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사업
1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5. 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소관분야 보장 결정·통지
16.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17.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
18.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통합사례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지지원과) 복지과의 설치 목적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계층 해소를 통한 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관련된 고령화 대책 추진
4.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사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에 관한 사항 및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7. 여성정책·보육 행정에 관한 사항
8. 여성정책·보육 분야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장 결정·통지
9.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건강 가정 육성
11.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12. 새터민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13.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한 부모 가정 복지증진
15. 여가·레저 활동 육성 지원
16. 그 밖에 복지서비스 행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의 설치목적은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체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총괄
3.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 등 민원 처리 주무부서 지정
4. 일반·여권·창구민원 등 민원사무 총괄·조정
5. 민원행정제도 운영·개선·지도
6. 민원1회방문처리제(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의 설치·운영 등) 운영
7. 언제, 어디서나 민원 처리
8.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등록 및 외국국적동포 인감에 관한 사항
10. 수형인 명부 관리
11. 자동차·건설기계 검사기간 경과 안내
12.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발급 및 재봉인
13.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4.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6. 공주시 컨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제14조(회계과) 회계과의 설치 목적은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와 세출예산

의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의 합리적, 생산적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생활을 충족시키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으로 조직의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시비 및 국·도비 재배정분 지출
2. 공무원 보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일상경비 교부 및 일상경비 출납검사
4.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6. 자산·부채 실사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사·용역계약 및 물품의 구매·조달·수불·수선에 관한 사항
8. 공사·용역·물품구매의 발주 전 적정성 분석 및 심사·점검에 관한 사항
9. 관용차량 운영
10. 재물조사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11. 물품정수 책정 및 배정 업무
12.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3. 시 청사 총괄 현황 관리 및 관사 유지 관리
14. 시 본청,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
15. 그 밖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세무과) 세무과의 설치 목적은 시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명정대한 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 세정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2. 지방세 관련제도 연구 및 운영
3.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 배정
5. 지방 세정 종합전산망 관리

6.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 등 세원 발굴
7. 세입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과정 총괄 관리
9.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0. 기부금품 모집 통제
11. 시 금고 지정·감독 및 검사
12.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13. 납세자 보호 및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
14. 개별주택가격 및 지방세 과표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16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의 설치 목적은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축제 운영으로 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진흥정책 수립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밝고 명랑한 시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금강권, 백제문화권, 타 지역과 협력관계 유지 및 공동사업 추진
4.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5.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총괄
6. 관광업체 등록·육성·지도·감독
7. 관광 불편신고 및 안내 센터(관광안내소) 운영
8.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 상품 개발
9. 관광진흥자금 융자 안내
10.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공주국제미술제,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등의 문화예술 행사

11.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관광안내통역원,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12.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13.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감상실업, 공연장에 관한 사항
14. 노래연습장업·게임장업에 관한 사항
15.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인쇄소 및 출판사에 관한 사항
17. 종교 행정업무 종합 기획·조정
18. 비지정 관광지 지정·관리
19. 관광지 지정·개발 및 관리
20. 관광 시설물 설치·유지 및 관리
21. 온천 개발 및 온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22. 종합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23. 유기장업 관련 사항
24. 관광지조성 특별회계 설치·관리
25. 각종 축제 추진 및 축제와 관련된 단체의 육성·관리
26. 웅진성 수문병 근무 교대식 거행
27. 밤 축제 추진 및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 등
28. 고마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9. 테마 관광코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30.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
31. 공주의 대표 먹거리 개발 및 먹거리촌 육성
32. 그 밖에 관광 진흥,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문화재과) 문화재과의 설치 목적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원형유지 및 전승에 기여하고 문화유산의 공개 및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2. 공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업무 추진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사항
6.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및 향토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시설 개수·보수, 전시물 관리 및 관리·운영
9. 문화재, 매장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지정·보존·관리 계획 수립·조정
10. 사적·유적지 및 문화재의 보호관리
11. 충·효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국가지정문화재 환경정비
13. 공산성·송산리 고분군 관리·운영
14. 석장리박물관 관리·운영
15. 석장리박물관 소장 유물 관리
16. 석장리유적지 관련 고고학 연구 등 관련 학문 발전에 관한 사항
17. 공산성·송산리 고분군 및 석장리박물관 전시물 수집 및 전시·연출
18. 공산성·송산리 고분군 및 석장리박물관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19. 소관 사적·명승을 활용한 관광 기념품 개발·제작·판매
20. 그 밖에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의 설치 목적은 학교 교육 지원 및 시민 평생 교육을 통해 품격 높은 교육문화를 형성하고, 아울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밝고 명랑한 시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체육지원,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2.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3. 공주시 장학재단 운영 지원 및 각종 장학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주 한민족 교육특구”에 관한 사항
5. 누리사업 협력 지원

6.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7. 각종 시민교육 프로그램 총괄 관리
8.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법」에 관한 사항 총괄
10. 직장 체육팀 육성 및 시민 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경기가맹단체 및 생활체육협회 지원
12. 장애인 체육 업무 지원
13.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14.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5. 학교 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
16.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7. 레포츠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골프장, 항공·수상 레저시설에 관한 사항
19. 수상 레저업 유치·등록,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지도·단속,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21. 그 밖에 교육정책, 시민교육, 체육진흥,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안전산업국) 안전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기업경제과장·건설과장·도시정책과장·허가과장·수도과장·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의 설치 목적은 재난·재해 대응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조성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3.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상황실) 및 재난 현장지휘소 구성·운영 총괄
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5. 지역 방재 종합계획 수립·운영
6. 자연적·인적·사회적 재난 총괄
7. 생활안전정책 총괄
8.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관계 법령과 관련된 부서에서 유지·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당한다.
9. 재난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수준 진단·분석
11. 안전지수, 안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12. 재난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13.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14. 재해복구 계획 수립
15. 방재 장비·물자 통합관리·운영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건축물 관리
17.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역 지정·관리
18.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및 해소계획 수립
19. 재난 유형별 실제훈련 계획 수립·운영
20.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2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
22.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23. 민방위대 조직운영, 자원관리, 동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4.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25. 테러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26.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27. 「통합방위법」에 관한 사항

28.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9. 을지연습, 화랑훈련 및 충무훈련에 관한 사항
30. 소방행정 등에 관한 사항(소방관련 사업 포함)
33.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4. 치수 및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35.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36. 위임 관리하는 국·도유재산(하천·제방)의 관리·취득·처분
37. 하천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
38. 금강 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9.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0. 그밖에 안전정책·재난관리, 민방위, 하천관리 및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등

제21조(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의 설치 목적은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창업, 유치, 경영개선과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균형 있는 시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기업, 소상공인 등)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조정
2.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3. 국내·외 투자 및 우수기업 유치, 기업입지 조사 및 자료 제공
4. 창업 및 이전 기업의 각종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 편의 제공
5. 기업유치 촉진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상품 및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 등
8. 부정경쟁행위 지도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리검정
12. 대형 유통업 등록 관리 및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13. 기능경기대회 지원
14. 기업인협의회 운영 지원
15.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
16.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제품 수출 및 통상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창업계획 승인 및 공장시설 승인,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공장 등록 시점까지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총괄(공장등록 시점 이후부터의 민원은 개별법령 소관부서에서 처리)
21. 제조업체 조사 및 기업 인력실태 조사
22. 지역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향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총괄
23. 지역혁신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24. 기업 지원과 관련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25.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
26. 특허, 저작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발명보호 등 지적재산권보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
28.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조성, 분양, 시설물 관리·보수
29.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리
30.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31. 노동조합 관리 및 노사 안정대책 추진
32. 근로자 복지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33. 에너지(석유, 연탄, 가스 등)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4. 전기공사업 및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
35. 시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획 조정·총괄
36.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7. 공공근로, 고용촉진,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 추진

- 38.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39. 승강기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0.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1. 그 밖에 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2조(건설과) 건설과의 설치 목적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구현에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 2. 국·공유재산(시유재산 제외)의 관리·취득·처분
- 3. 육상 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
- 4. 건설업 면허 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
- 5. 가로 지장물, 노점상 단속, 과적차량 단속 등에 관한 사항
- 6. 농업용수 개발
- 7. 경지정리 및 관개시설 사업
- 8. 한해대책 총괄
- 9. 농촌 환경 정비사업(정주권, 전원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 10. 국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목적 외 사용승인
- 11. 공주시의 도로와 관련된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 12.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에 관한 사항
- 13. 고속도로·국도·지방도 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 협조 사항
- 14. 시도, 농어촌 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관한 사항
- 15. 도로부지 점용 인·허가
- 16.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17.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
- 18. 접도구역 및 육교 지하도 관리
- 19. 도로 굴착 등 그 밖에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로보수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단, 도로보수원 채용,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은 제외)
21. 주민 숙원사업의 추진
22.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3. 마을회관(노인회관) 신설·관리
24.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5. 생활민원 현장기동 민원처리반 운영(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26. 불편민원 신고 접수처리
27. 주민불편사항 예방 순찰 활동 전개 및 인지사항의 관련부서 통보
28. 기타 도시환경 불량 시설물 정비 등
29. 그 밖에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제23조(산림과) 산림과의 설치 목적은 산림의 합리적 보전으로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 임산물 소득원 개발 육성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
2. 임업진흥권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임목벌채에 관한 사항
5.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6. 숲 가꾸기 사업 계획 및 실행
7. 산지이용 구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9.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임도 및 사방댐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지관리법」에 관한 사항. 다만, 허가과에 분장된 사무는 제외
12. 채석단지 관련 업무 및 단지 내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13.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결정에 관한 협의에 관한 사항

14.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 준공검사 등 복구·준공관리에 관한 사항
15. 토석채취 변경 허가·신고,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1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간연장·분할납부·환급에 관한 사항
17. 산지(일시)전용·변경 허가·협의·신고, 기간연장, 취소, 불법전용 산지신고지 관리, 용도변경 승인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및 수목원 조성·관리
19. 산림유전자 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20. 등산로 개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1. 산림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2.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주알밤 유통센터 운영
25. 공주 알밤 축제 지원·협조 등
26. 그 밖에 산림정책에 관한 사항

제24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의 설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국토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경관법」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시설 내 미 보상 편입 토지 취득·보상
6.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관리·운영
7.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리·운영

8.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변경·집행 등에 관한 사항
9.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1.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
12.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3. 개발행위 허가(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4. 호남고속철도 건설 및 공주역사와 관련된 사항
15.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와 관련된 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16. 호남고속철도와 주변지역의 광역적 연계시스템 구축
17. 도시계획도로로 기획 및 사업 시행
18. 택지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
19.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운영
20.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관한 사항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총괄
23. 가로수 조성 관리 및 조경 사업
24.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25. 미시설 공원, 유원지의 개발·조성
26. 주요 도로변 화단 및 꽃길 가꾸기
28. 학교 숲 조성사업,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
27. 가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도시경관, 도시계획, 도시개발,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제25조(허가과) 허가과의 설치목적은 복합민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허가 사무의 일괄 및 공정한 처리로 시민 편의 및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고,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토지산림, 환경건축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승인, 사용 승인

3.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주택 및 건축과 관련된 법규 총괄
6. 건축허가 및 협의, 건축물 사용 승인
7.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
8. 건축물대장 보관·변경·정정·말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대장 발급
10. 개발행위 허가·협의 및 준공(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에 관한 사항
11. 농지전용 허가(협의·변경),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농지전용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3. 산지(일시)전용·변경 허가·협의·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토석채취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1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간연장·분할납부·환급에 관한 사항
16. 불법전용산지신고에 관한 사항
17. 건축신고(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및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18.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준공에 관한 사항
1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준공에 관한 사항
20.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복합민원 등 다양한 인·허가와 관련된 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협의)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제26조(교통과) 교통과의 설치 목적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용자동차 관련 인·면허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및 노선지정 관한 사무
4.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운수업체에 관한 사항
6. 도로변 승강장 설치 및 관리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비 관리자 및 차고시설 관련 사무
8. 충무교통계획 수립
9. 「교통안전법」에 관한사항 총괄
10. 「교통안전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1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13. 공공·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14. 불법 운행, 불법 주·정차 차량에 관한 사무
15. 주정차 지도·단속 및 견인에 관한 사무
16. 사업용 차량 관리
17.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8. 거리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관리사업체(정비, 매매, 폐차)의 등록 및 지도·감독
20. 여객터미널에 관한 사항
21.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3. 건설기계 사업체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교통신호기·경보등 설치 및 유지·관리
25. 「궤도운송법」에 관한 사항
26.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27. 그 밖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등

제27조(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의 설치 목적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아울러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으로 효율적.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및 청소행정의 종합 기획·수립 추진
2.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 「자연환경보전법」에 관한 사항
5. 자연생태계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과 관련된 사무
7. 수렵면허 발급·포획허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8. 유해야생동물 구제·수렵장 운영 및 조수 수입 허가
9.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사항
11.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12.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관한 사항
13. 환경보전 관리 및 지도·단속
14.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및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 지정 관리
16. 환경오염원 조사 분석, 오염도 측정, 배출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
17. 유독물 영업 등록 관리 및 화학물질 배출에 관한 사항
18. 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19.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총괄
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22.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3. 금학동생태공원 및 습지 관리

24. 청소행정 종합대책 수립 시행
25. 청소 사무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26. 국토대청결 운동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
27.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사항
28. 공주시(읍·면·동 포함) 가로 청소 및 환경미화원 관리
29.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읍·면·동 포함)
30. 건축폐기물 처리 지도·단속
3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32.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33.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및 폐자원 모으기 관련 업무(읍·면·동 포함)
34.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35.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시행
36.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3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처리업소 관리
38.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등) 설치·운영
39. 매립장 관리 및 정비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41.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단, 무기 계약근로자 채용,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은 제외)
42.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청소 행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수도과) 수도과의 설치 목적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공공하수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돗물 공급 전반에 관한 사항
7.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수도법」에 관한 사항 총괄
9. 하수도 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보존·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4.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먹는 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6. 취정수장, 배수지 운영 및 경비
17. 취수 및 정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관리
18.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19. 원수·정수 수질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0.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단, 무기 계약근로자 채용,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은 제외)
21. 그 밖에 상·하수도, 지하수 등 수도행정에 관한 사항

제29조(토지과) 토지과의 설치 목적은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관리와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확한 과세자료 산출 및 고품격 지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의 적정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
3.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사항
4. 외국(법)인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6.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7.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 안정화제도 운영
8. 지적측량검사 및 기준점 관리
9. 토지이동지 조사·등록·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
10.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 업무
11.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그 밖에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
12. 국토지리관련 일반삼각점(국토교통부 소관) 관리
13. 등록번호 미등재 조사 등록
14. 조상 땅 찾아주기
1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6. 지적 재조사에 관한 사항
17. 지적민원 처리, 지적통계, 지적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8.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21.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발급에 관한 사항
22. 「도로명주소법」에 관한 사항
23. “공주시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30조(성장전략사업단) 성장전략사업단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시정발전연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시정발전연구과) 시정발전연구과의 설치 목적은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 농촌혁신을 통한 도농 균형 발전, 공주 밤 연구 등 주요 전략 정책을 개발하여 공주시 미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시정발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개발·연구, 지역협력, 도농교류, 농촌혁신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2. 국가 및 지방 균형발전 사업 총괄

3.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
5. 정책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시정발전연구단 운영
7. 세종특별자치시와 다원적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8. 세종특별자치시와 지역협력 및 지역공동화방지대책 종합 추진 관리
9. 지역협력사업 예산확보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신규 지역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1. 농촌체험사업 중 3농혁신과 연계된 사업에 관한 사항
12. 마을단위 추진 조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마을단위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별·마을별 생산품의 브랜드화
15. 1사(1교)1촌 자매결연 및 도농 교류 추진
16.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7.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제외)
18.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농촌체험사업과 관련된 농촌 6차산업화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사회적 기업 제외)
20. 농촌마을 리더 및 체험지도자 육성 및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21. 녹색농촌 휴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여름캠프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22. 농촌문화 체험사업 추진
23. 지역별 마을별 특화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24. 도시민 개별농가단위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25. 농촌체험 연구모임 육성에 관한 사항
26. 농촌체험학습 고객 유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27. 마을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28. 농촌체험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9. 평생분담마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0. 공주 밤 연구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1. 공주 밤 연구위원회 구성 및 지원
32. 공주 밤 산.학.연 협력단 운영
33. 공주 밤 가공, 유통 기술 지원
34. 그 밖에 정책개발, 지역협력, 도농교류, 농촌혁신, 밤 연구에 관한 사항

제32조(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의 설치 목적은 사곡면 계실리 지구(이하 “복합연수단지”라 한다.) 국가.공공기관 및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이하 “도기관”이라 한다.)의 이전 지원과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활성화 및 도자공예 문화자원 육성을 통해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합연수단지 조성 및 도기관 이전 사업 총괄관리와 행정지원
2. 지역 주민과 개발 협의체 구성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대상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민원대책에 관한 사항
4. 이전시설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방안 마련
5. 도기관의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6. 세종특별자치시와 다원적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복합연수단지 및 도기관 도시(지구단위)계획결정, 사업실시계획 종합 수립 지원
8. 복합연수단지내 기관이전 및 도기관 이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복합연수단지내 잔여 부지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10. 복합연수단지 및 도기관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복합연수단지 및 도기관 이전 주변지역 토지관리 및 주민 편의시설과 시설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2. 복합연수단지 및 도기관 이전지역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사업, 구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 제민천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만들기 사업 등) 총괄 조정.지원.추진에 관한 사항
14.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5. 도시 빈집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6.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17.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18.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사항
19. 공주철화분청도자타운 조성사업 추진
20.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추진
21. 계룡산 도예촌 이미지개선사업 추진
22. 반포 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23. 이삼평공원에 관한 사항
24. 도자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복합연수단지 조성 및 도기관 이전, 도시재생, 고도육성, 도자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와 보건지소

제33조(소장 및 지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과와 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보건과) 보건과의 설치 목적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조정
2.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산하 조직 및 직원에 대한 복무지도·감독
4.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진료비 징수
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진료 및 치료에 관한 사항
7.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역대책수립에 시행에 관한 사항
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예방사업(예방접종 포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생충 관리에 관한 사항
12. 결핵관리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항
13. 한센병, 성병, 신종감염병 예방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독업자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에 관한 사항
15. 공중위생업소 및 이용시설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의료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에 관한 사항
17.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 대마 관리에 관한 사항
18.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9. 응급의료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21. 집단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
22. 향토전통음식 개발 육성
23. 안전한 식 재료 및 식품에 관한 사항
24.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단, 무기계

약근로자 채용,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은 제외)

25. 그 밖에 보건소 운영에 관하여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6조(건강과) 건강과의 설치 목적은 고령화 시대에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행태개선사업(운동, 영양, 비만, 절주)에 관한 사항
2.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3.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5.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7.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 암 관리에 관한 사항
9.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0.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2.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3.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관련된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5.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사항
16.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7.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단, 무기

계약근로자 채용,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은 제외)

18. 그 밖에 시민건강에 필요한 사항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37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8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9조(농정과) 농정과의 설치 목적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촌 발전대책 관련 사업 종합 기획
2.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등) 육성
3.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 운용
4.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운영
5.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6. 농정심의회 및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
7. 농어민자녀학자금 및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8. 농림사업 추진 총괄 및 사업예산 신청
9. 「농지법」에 관한 사항 총괄

10. 농지전용 허가(협의·변경),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농지전용 신고지의 용도 변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및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관리
12. 농업기술센터 내 시설·예산·세외수입·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식량작물 증산 계획 수립 추진
14.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15.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6. 농업기계 등 농자재 지원사업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7. 농토 배양 사업 및 농업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8.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추진 등 직불제 사업 관련 업무
19. 지역생산 농산물 판로(국내·외) 개척 협조
20. 농업과 관련된 향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1.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확보 및 운영·지원
22. 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23. 상품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홍보
24. 품목별 우수상품 인증 기준 마련 및 관리
25. 지역 농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26. 농·특산물 수출 및 통상 진흥에 관한 사항
27.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사항
28. 농산물 보관, 가공 산업 육성
29. 채소, 과수, 화훼, 잠업, 인삼, 특작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원예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원예, 특작분야 생산자 단체 관리
31. 지역특화 산업 육성
32.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3. 로컬푸드사업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관하여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축산과) 축산과의 설치 목적은 축·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축·수산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축산단지 조성 및 축산사업 추진
3. 초지 조성 및 기성초지 사후관리
4.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 육성 및 곤충 사업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가축방역 관련단체 관리 및 지역방역협의회 운영
8. 가축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9. 동물병원·동물약품 도매상 인·허가 및 관리·감독
10.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법」에 관한 사항
11. 가축 방역시설 장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
13. 축산물 유통, 식육판매점 인·허가 및 지도·감독
14. 가축 분뇨의 자원화(액비) 사업에 관한 사항
15.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축·수산업 정책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41조(농촌진흥과) ① 농촌진흥과의 설치 목적은 농업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살기 좋은 농촌 환경조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추진·평가
2.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
3. 농업경영 개선 지도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5.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6. 농업기술 유통정보 수집 및 제공
7. 농업경영 정보화 교육
8. 농업인 및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9. 농업인대학 운영
10. 농촌인재 육성·지원
11. 생활개선사업 추진
12.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및 농산물 가공·저장 지도
13. 농산물 및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과 이용
14. 자생식물 보호 및 멸종위기 식물 번식·복원
15. 과학영농 기법 개발 및 보급
16. 귀농귀촌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 총괄
17.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단,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은 제외)
18.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의 설치목적은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량 쌀 및 발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2. 작물환경개선, 친환경농업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작물 병충해 예찰·예방,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지도
4. 농업 기상관측 및 결과 분석
5. 노지·시설원예(채소, 과수, 화훼, 산채류 등)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7. 특용 및 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8. 양잠기술 지도
9. 축산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업무 추진
10. EM(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농작물 신제품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인력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13.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와 이용률 향상에 관한 사항
14.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단,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은 제외)
15. 그 밖에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43조(소장 및 관장의 직급) 문화시설사업소장과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의 설치 목적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체육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소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문예회관, 국궁장, 곰나루 국민관광지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2.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운영
3. 각종 경기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입장·관람권 수표 및 검표
5. 입장·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 관리
6. 각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이용 및 재정수입 증대 방안
8. 수준 높은 각종 공연기획 및 유치
9. 관광지 정화 질서유지
10. 곰나루 야외무대 광장 및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

11. 그 밖에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5조(복지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의 설치 목적은 종합사회복지관·한옥마을 등을 통해 시민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선진 장사시설 나래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있으며, 소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내 시설, 예산, 세외수입,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종합사회복지관 종합 관리·운영
3.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아동 복지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한옥마을 관리·운영·홍보
5. 공예공방촌 및 공예품전시판매관 시설 개수·보수 등
6. 공예품 개발 및 공예인 육성
7. 나래원 관리·운영·홍보
8. 공예공방촌 및 공예품전시판매관 관리·운영
9. 연지·야생화단지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0.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단,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단체교섭, 임금협상 등은 제외)
11. 그 밖에 복지시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시립도서관) 도서관의 설치 목적은 시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법」에 관한 사항 총괄
2. 시립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도서관 포함)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
3. 시립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4. 시립도서관 시설, 예산, 세외수입,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
6. 도서구입 및 기증도서 보관·관리
7. 도서자료의 대출 및 회수·관리
8. 디지털자료실 관리·운영
9. 각종 열람실 관리·운영
10. 이동도서관 운영
11. 그 밖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동

제47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부읍·면장의 직급) 읍·면에 두는 부읍·면장은 총무업무 또는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49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별표 4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의정담당” 을 “의정팀장” 으로 한다.

② 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5호서식 중 “행정(인사)담당” 을 “시정(인사)팀장” 으로 한다.

③ 공주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인사담당” 을 “인사팀장” 으로 한다.

④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관광경영사업소, 상수도시설담당, 석장리박물관” 을 “복지시설사업소, 상수도시설팀, 석장리박물관” 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3호 중 “공공시설관리소” 를 “문화시설사업소” 로 한다.

제37조제5항제2호 중 “주무담당” 을 “주무팀장” 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공공시설관리소” 를 “문화시설사업소” 로 하고 “관광경영사업소” 를 “문화재과” 로 한다.

별지제3호서식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한다.

⑤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농업과” 를 “농정과” 로 한다.

⑥ 공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문화체육과장, 관광경영사업소장은 문화재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과장” 을 “문화시설사업소장은 교육체육과장, 복지시설사업소장은 복지지원과장” 으로 한다.

⑦ 공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정보감사담당관” 을 “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⑧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정보감사담당관” 을 “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⑨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한다.

- ⑩ 공주시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7호서식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한다.
- ⑪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한다.
- ⑫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시재생과장” 을 “도시정책과장” 으로 한다.
- ⑬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과장.농촌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 을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장.농촌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 중 “농업과장” 을 “농정과장” 으로 한다.
- ⑭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농업과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농정과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으로 한다.
- ⑮ 공주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과장” 을 “농정과장” 으로 한다.
- ⑯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관광경영사업소” 를 “문화재과” 로 한다.
별지제4호서식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소장” 을 “과장” 으로 한다.
별지제6호서식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한다.
- ⑰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중 “담당” 을 “팀장” 으로, “관장” 을 “과장” 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본 조직개편관련 인사 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 (제49조 관련)

읍·면·동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인면사무소	이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탄천면사무소	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룡면사무소	계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포면사무소	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의당면사무소	의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정안면사무소	정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우성면사무소	우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평면사무소	신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중학동주민센터	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웅진동주민센터	웅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금학동주민센터	금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옥룡동주민센터	옥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관동주민센터	신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월송동주민센터	월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2]

부읍·면장의 직급 (제41조 관련)

읍·면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복지주사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신흥면사무소	신흥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별표3)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총 계	998	548	17	157	51	225	20	132	73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60	540	17	127	51	225	20	132	73
4급 소계	6	4	1	1					
지방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3	1						
5급 소계	52	26	2	5	3	16	1	9	6
지방행정사무관	7	7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6	12	2		2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8					8	1	7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9	154	3	39	11	42	4	27	11
지방행정주사	74	54	2		4	14	1	9	4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시설주사	12	12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	15			15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6	5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6	4			2	10	1	6	3
지방행정·전산주사	2	2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5	5							
지방행정·농업주사	12	3		4		5		2	3
지방행정·녹지주사	4	4							
지방행정·보건주사	4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지방행정·시설주사	28	26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간호주사	4			4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5	3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4	1				3		3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2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0	4				6	1	5	
지방행정·농업·축산주사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1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지방운전주사	2	2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지방기계운영주사	1				1				
7급 소계	279	173	4	28	12	62	5	34	23
지방행정주사보	72	52	2	1	3	14	2	3	9
지방세무주사보	7	7							
지방전산주사보	2	2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7				12		6	6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사서주사보	4				4				
지방공업주사보	6	4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보건진료주사보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6	26							
지방방송통신주사보	2	1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6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3	4				9	1	5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4	6				8	1	6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6	5			1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6	1		2		13		11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21	16	1			4	1	2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3	1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2	2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5	5							
지방위생주사보	2	1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지방통신운영주사보	1				1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2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기계운영주사보	4	1	1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8급 소계	226	116	3	39	9	59	4	38	17
지방행정서기	45	24	3			18	2	9	7
지방전산서기	1	1							
지방세무서기	10	9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10	4				6		6	
지방사서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3	3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3			3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19	10			1	8		8	
지방행정·전산서기	3	2			1				
지방행정·세무서기	9					9	1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2	9				3		2	1
지방행정·사서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서기	6	5			1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1		5	1	2	2
지방행정·녹지서기	2	2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3	
지방행정·환경서기	3	3							
지방행정·시설서기	19	16				3		1	2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지방공업·농업서기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3			3					
지방보건·간호서기	7			7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2	1		1					
지방간호·보건·의료기술서기	1			1					
지방운전서기	9	8			1				
지방위생서기	6			1	2	3		2	1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기계운영서기	6	4		1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2	2							
9급 소계	148	67	4	15	16	46	6	24	16
지방행정서기보	25	8		1	1	15	2	9	4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0	3				7	2	2	3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농업서기보	2			1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1				3		2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7	1				6		1	5
지방행정·공업서기보	2				2				
지방행정·농업서기보	6			1		5		5	
지방행정·녹지서기보				1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2	2							
지방행정·시설서기보	5	4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시설·녹지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2		2						
지방운전서기보	25	19	2	2	2				
지방위생서기보	10	2		1	2	5		2	3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지방통신운영서기보	1	1							
지방전기운영서기보	1				1				
지방기계운영서기보	5	2		1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16	12		1	3				
연구직 계	5	5							
지방학예연구사	3	3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방기록연구사·행정주사보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도직 계	30			30					
지도관 소계	3			3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도사 소계	27			27					
지방농촌지도사	23			23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별표 4]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2항 관련)

(단위: 명)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동	직무분야
총 계	11	6	2	2	1		
일반직 소계	11	6	2	2	1		
5급 소계	2	1		1			
지방행정사무관	1	1					기업유치1
지방의무사무관	1			1			의료분야 1
6급 소계	1	1					
지방행정주사	1	1					시정홍보 1
7급 소계	5	3		1	1		
지방행정주사보	4	2		1	1		시정홍보 1 축제 1 유통지원 1 공연기획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	1					공공디자인 1
8급 소계	1	1					
지방행정서기	1	1					외국어 통역 1
9급 소계	2		2				
지방속기서기보	2		2				속기사 2